

이상 보호기금의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문나는 사항이 계시거나 질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장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
기로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
만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4월 1일

○ 회부일자 : 1992년 4월 1일

3. 제안이유

의료보호법(법률 제4353호, 91. 3. 8),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461, 91.
9. 6), 동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91. 10. 10)이 전면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의료보호 진료비의 본인부담 및 대불기준(보건
사회부고시 91-83호, 91. 12. 18)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의료보호대불금 분할상환기간조정 “1년 내지 3년” → “9월 내지 3년”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 조례 제5조 제2항)

나. 대불금 결손처분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던 것을 “시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토

록 함.(의료보호법 제18조, 조례 제5조 2항)

다. “의료보호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삽입(의료보호

법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조례 제7조 제1항)

라. “의료보호기금 운용현황의 분기보고”조항 신설(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

29조, 조례 제7조 제2항)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면밀
히 검토한 바,

가. 의료보호법(법률 제4353호, 91. 3. 8), 동법시행령(대통령령제13461호,

91. 9. 6), 동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91. 10. 10)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개정으로 대불금 결손 처분시 도지사 승인사항에

서 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다.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개정으로 100,000원 미만의 대불금 분할 상환기간을 1년에서 9월로 조정하였으며,

라.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의료보호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토록 명시되었고,

마.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료보호기금운용 현황을 분기보고”토록하여 그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과 현행 조례의 字句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 조례안 : 별 첨

7. 개정근거 및 참고 자료 : 별 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쳐졌습니다.

○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근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대불금 결손처분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 처리하는 것은 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토록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구

성과 그 신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의료보호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 손익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두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회장 정태현 시군의 위원회 설치에 위원장이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5인 이내로 되고 여기에서 사회과장, 보건